

원화 펌뱅킹서비스 계약서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3.3.28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5 조(실시간수납이체 업무의 범위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6조(신청서의 접수)</p> <p>⑦의 5. "갑" 또는 "을"이 처리한 “납부자”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민원은 모두 "을"의 <u>책임으로 하며,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은 "을"의 책임으로 한다.</u> 다만, "갑"은 "을"의 대고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.</p> <p>제 7조(자동계좌이체 의뢰) ~ 제 34조(기밀유지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35조(면책)</p> <p><u>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고장 및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, 불능 등에 대하여 “갑”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</u>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그 책임을 면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 1조(목적) ~ 제 5조(실시간수납이체 업무의 범위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 6조(신청서의 접수)</p> <p>⑦의 5. "갑" 또는 "을"이 처리한 “납부자”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민원에 대하여 “갑”의 <u>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“갑”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u> 다만, "갑"은 "을"의 대고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.</p> <p>제 7조(자동계좌이체 의뢰) ~ 제 34조(기밀유지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 35조(면책)</p> <p><u>“갑”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고장 및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, 불능 등에 대하여 “갑”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</u>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그 책임을 면한다.</p>	<p>신청서의 접수 관련 “갑”의 귀책사유에 대해 책임 명확히 기술 함</p> <p>면책 관련 “갑”의 책임 명확히 기술 함</p>

<p>제 36조(손해배상) ~ 제 41조(종료 및 연장) (생략)</p> <p>제 42조(관할법원)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<u>법</u>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 <p>제 43조(특약사항)</p>	<p>제 36조(손해배상) ~ 제 41조(종료 및 연장) (좌동)</p> <p>제 42조(관할법원)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<u>민사소송법</u>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 <p>(좌동)</p>	<p>관련법을 명확히 기술함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